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다289310 총회의결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외 2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6호), 제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광역시청, ○○광역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3,696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2) 피고는 2014. 9. 16.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전국광역 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광역연맹은 총연합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는 광역연맹 가입 당시 공노총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8. 6.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투표한 조합원 2,849명 중 1,595명의 찬성(55.98%)으로 공노총 가입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공노총 가입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 제1, 2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